

#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\_WR 개정대비표

## 1. 주요 개정 내용

현 행	개 정	비고
<p><b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</b> (판매기업용 – 상환청구권 있음)</p> <p><b>여신거래약정서(기업용)</b></p> <p><b>제 1 조 거래조건</b></p> <p>① 한도거래여신의 경우에는 약정기한 이내에서 1회의 회전기간 및 개별여신의 여신기간을 달리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, 동 기간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</p> <p>② (기재생략)</p> <p>③ (기재생략)</p> <p><b>제 2 조 대출이자율의 변동</b></p> <p>① 제1조의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.</p> <p>1.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란 원화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 실행 직전 영업일의 91일물 CD 유통수익률, AAA등급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, AAA등급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, 단기코픽스금리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하고, 외화대출의 경우에는 LIBOR 1개월물, LIBOR 3개월물, LIBOR 6개월물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.</p> <p>2. 각각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는 아래의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.</p> <p>가. 91일물 CD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수익률</p> <p>나. 6개월물 금융채 또는 1년물 금융채의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3개 채권평가회사 통합표의 수익률</p> <p>다. 단기코픽스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금리</p> <p>라. LIBOR 1개월물 또는 LIBOR 3개월물 또는 LIBOR 6개월물은 IBA(ICE Benchmark Administration)가 고시하는 금리</p> <p>② 제1항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1조에서 정한 변동주기마다 최초 대출상당일(최초 대출상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 말일) 직전 영업일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를 기준금리로 하여 제1조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별도의</p>	<p><b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</b> (판매기업용 – 상환청구권 있음)</p> <p><b>여신거래약정서(기업용)</b></p> <p><b>제 1 조 거래조건</b></p> <p>(삭제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(삭제)</b></p>	<p>손님에게 불리한 항 삭제 (금감원권유) 체상 체상</p> <p>업무절차에 따른 불필요 조항 삭제</p>

<p><b>통지없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</b></p> <p><b>제 3 조 지연배상금</b></p> <p>① 이자 · 분할상환금 ·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, <b>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</b></p> <p>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(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9 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)에는, <b>그 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,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</b></p> <p>③ 한도대출의 경우, 한도초과지급 및 이자원가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<b>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</b></p> <p><b>제 4 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</b></p> <p>①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, 채무총액은 최종의 실행 후에 확정되며, 확정방법은 <b>분할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.</b></p> <p>② 적금대출 및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, <b>은행은 확정된 채무총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.</b></p> <p><b>제 5 조 감액 · 정지</b> (기재생략)</p> <p><b>제 6 조 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에 대한 약정</b></p> <p>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종합통장기본계좌 및 당좌예금(이하 “모계좌”라 합니다)에 입금된 자금(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,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)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②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,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.</p> <p>③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제 1 조의 여신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, 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곧 변제하거나 해당 모계좌에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기로 하며, 입금된 자금은 미수이자 및 지연배상금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④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 일간 지체한 때 은행여신거래약관(기업용) 제 7 조 제 2 항에 따라 통지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, 그 때부터 대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</p>	<p><b>제 2 조 지연배상금</b></p> <p>① 이자 · 분할상환금 ·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, <b>그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</b></p> <p>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(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9 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)에는, <b>그 다음날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,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</b></p> <p>③ 한도대출의 경우, 한도초과지급 및 이자원가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<b>한도 초과된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</b></p> <p>(삭제)</p> <p><b>제 3 조 감액 · 정지</b> (연행과 같음)</p> <p>(삭제)</p>	<p>조 체상 및 여신거래약정 서(기업용) 문구 반영</p> <p>업무절차에 따른 불필요 조항 삭제</p> <p>조 체상</p> <p>업무절차에 따른 불필요 조항 삭제</p>
---	---	---

<p><b>곧 지급하기로 합니다.</b></p> <p>⑤ 당좌대출의 경우,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어음 · 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를 지게 된 때에는,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.</p> <p>⑥ 당좌대출의 경우, 제 5 조에 의한 감액 · 정지로 인하여 그 전에 본인이 발행한 어음 · 수표가 지급거절되더라도 이의 없기로 합니다.</p> <p>⑦ 은행은 어음 · 수표의 지급거절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, 본인이 여신기간 만료일전에 발행한 어음 · 수표를 여신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.</p>	<p><b>제 7 조 인지세의 부담</b> (기재생략)</p> <p><b>제 8 조 담보권 설정</b></p> <p>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증서(통장)의 인도를 마쳤습니다.</p> <p>② 제 1 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 · 수익권(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)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 · 수익의 수익권, 특별장려금,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.</p> <p>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 · 개서 · 갱신 · 분할 · 병합 · 증액 · 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,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.</p> <p>④ 은행은 제 1 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■ (근)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: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종 별</th> <th>증서 기 · 번호</th> <th>명의인 또는 위탁자</th> <th>금 액 (계약액)</th> <th>20 . . . 까지 입금누계액</th> <th>증서일 자</th> <th>지급기일</th> </tr> <tr> <th>계좌번호</th> <th>수익자</th> <th></th> <th></th> <th></th> <th>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 별	증서 기 · 번호	명의인 또는 위탁자	금 액 (계약액)	20 . . . 까지 입금누계액	증서일 자	지급기일	계좌번호	수익자																										<p>조 체상</p> <p>업무절차에 따른 불필요 조항 삭제</p>
종 별	증서 기 · 번호		명의인 또는 위탁자	금 액 (계약액)	20 . . . 까지 입금누계액	증서일 자	지급기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계좌번호	수익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<b>제 9 조</b>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(기재생략)						조 체상
<b>제 10 조</b> 자료의 제출 등 (기재생략)						조 체상
<b>제 11 조</b> 기타 특약사항	본인	(인)				조 체상
<b>추가약정서 (판매기업용)</b>						용어수정
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,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)						
<b>주식회사 하나은행</b> 앞						
본인은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」을 위한 _____년 ____월 ____일자 여신거래약정(이하 "원 약정서"라 한다)에 추가하여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, 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과 금융결제원의 「B2B 업무규약」 및 「동 시행세칙」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.	본인은 「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」을 위한 _____년 ____월 ____일자 여신거래약정서(이하 "원 약정서"라 한다)에 추가하여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, 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과 금융결제원의 「B2B 업무규약」 및 「동 시행세칙」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.					준용 약관 추 가 등 문구 수정
<b>제 1 조 (서류의 제출)</b> (기재생략)						
<b>제 2 조 (입금계좌 지정)</b> 대출금 또는 상기 채권만기시의 현금 입금계좌는 다음 계좌로 합니다.						용어 수정
<b>제 5 조</b>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(연행과 같음)						
<b>제 6 조</b> 자료의 제출 등 (연행과 같음)	본인	(인)				
<b>제 7 조</b> 기타 특약사항						
<b>추가약정서</b>						
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,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)						

<p>계좌번호 : <u>예금주:</u></p>	<p>입금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(CMS 계좌 제외) 중 다음의 계좌로 합니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cccccc;">예금주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cccccc;">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cccccc;">계좌번호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cccccc;">비 고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예금주	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	계좌번호	비 고				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	
예금주	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	계좌번호	비 고							
			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							
<p><b>제 3 조 (개별대출의 실행)</b></p> <p>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은 INTERNET(인터넷) 등의 방법으로 귀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담보 매출채권[귀행이 원 약정서 및 본 추가약정서에 따라 본인에게 취급한 대출원리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귀행이 본인으로부터 양도받은 본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으로서, 그 채권의 채무자인 _____ (이하 "거래처"라 합니다)로부터 통보받은 구체적인 채권명세를 기초로 귀행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매출채권 내역을 뜻하며, 이하 "매출채권"이라 합니다]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대출받기로 하고, 귀행 또는 인터넷 등의 전산상의 사유로 해당일에 취급하지 못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대출받기로 합니다. 단 본인이 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담보 매출채권은 대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그 지급기일이 180 일 이내인 채권에 대하여만 대출을 신청하기로 합니다.</p>	<p><b>제 3 조 (개별대출의 실행)</b></p> <p>① 은행이 원 약정서에 따라 본인에게 대출함으로써 본인이 부담하게 될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, 별도로 약정하는 「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」에 따라 본인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②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은 은행이 본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 할 수 있기로 합니다.</p> <p>③ 외상매출채권 별 대출가능금액은 채권금액에서 채권별로 이미 대출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④ 본인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담보매출채권은 그 만기일이 발행일(통보일)로부터 180일 이내인 채권에 대하여만 대출을 신청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⑤ 대출가능기간은 외상매출채권별로 은행과 구매기업이 약정한 협력기업의 대출취급가능일부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로 합니다.</p> <p>⑥ 개별대출의 신청은 은행의 기업인터넷뱅킹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다.</p>	업무절차에 따른 문구 수정								
<p><b>제 4 조 (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)</b></p> <p>①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<u>변제기일</u>로 합니다.</p> <p>② 제 1 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<u>지급기일</u>에 귀행이 동채권의 채무자인 거래처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고, 거래처가 <u>지급기일</u>에 귀행에게 담보매출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③ (기재생략)</p> <p>④ 거래처가 <u>지급기일</u>에 입금(또는 결제)한 매출채권결제금액이 협력기업들(본인 포함)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대출 취급분, 미취급분의</p>	<p><b>제 4 조 (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)</b></p> <p>①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<u>만기일</u>로 합니다.</p> <p>② 제 1 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<u>만기일</u>에 귀행이 동채권의 채무자인 거래처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고, 거래처가 <u>만기일</u>에 귀행에게 담보매출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거래처가 <u>만기일</u>에 입금(또는 결제)한 매출채권결제금액이 협력기업들(본인</p>	용어 수정								

<p>순서로 회수하여 만기도래 순, 접수일자 순,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상환처리하기로 합니다.</p>	<p>포함)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대출 취급분, 미취급분의 순서로 회수하여 만기도래 순, 접수일자 순,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상환처리하기로 합니다.</p>	
<p>⑤ 대출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<b>지급기일</b>로부터 기산하여 대출금 상환일 전일까지 원 약정서 제 1 조 제 1 항에서约定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하기로 합니다.</p>	<p>⑤ 대출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<b>만기일</b>로부터 기산하여 대출금 상환일 전일까지 원 약정서 제 1 조 제 1 항에서约定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하기로 합니다.</p>	용어 수정
<p><b>제 5 조 (대출의 제한)</b></p> <p>①~③ (기재생략)</p>	<p>제 5 조 (대출의 제한)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	
<p>④ “원 약정서”상 제 1 조의 여신한도금액에도 불구하고, <b>귀행과 거래처간에 체결한 ‘거래처의 협력기업들(본인 포함)에 대한 의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총 대출한도’를 초과하는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.</b></p>	<p>④ 원 약정서 제 1 조의 여신한도금액에도 불구하고, <b>본인 및 다른 협력기업의 대출잔액의 합계금액이 은행과 구매기업간에 체결한 “협력기업에 대한 총대출한도”를 초과하였거나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.</b></p>	용어 수정
<p><b>제 6 조 (지연이자 수취)</b></p> <p>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상생협력법”)과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하도급법”)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지연이자 (할인료 또는 대출 이자)를 받을 수 있습니다. ①~② (기재생략)</p>	<p><b>제 6 조 (관련법상 지연이자에 대한 유의사항)</b></p> <p>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<b>협력기업은</b>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상생협력법”)과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하도급법”)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지연이자 (할인료 또는 대출 이자)를 받을 수 있습니다.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	모호한 문구의 제목 및 용어 수정 (금감원 권유)
<p><b>제 7 조 (정보제공의 동의)</b></p> <p>본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<b>본인에 관한 기본정보 및 개별대출 실행내역 등의 거래내역을 “거래처”에 제공함에 동의하기로 합니다.</b></p>	<p><b>제 7 조 (정보제공의 동의)</b></p> <p>이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<b>구매기업에게 본인에 관한 약정정보 및 사업자정보, 대출내역 등을 제공함에 동의하기로 합니다.</b></p>	용어 수정
<p><b>제 8 조 (면책)</b></p> <p>① 제출서류의 허위, 위변조,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,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② (기재생략)</p>	<p><b>제 8 조 (면책)</b></p> <p>① 제출서류의 허위, 위변조,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,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. 다만, <b>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.</b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손님에게 불리한 문구 수정 (금감원 권유)

<p><b>제 9 조 (상환 의무)</b></p> <p>본인의 거래처와 귀행 간에 사전에 협의한 CMS, Real Time Banking 기타 전산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명세 통보시 해킹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채권명세, 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본인이 인터넷 또는 창구에서 대출 신청시 전산오류와 해킹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외상매출채권금액보다 대출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</p>	<p><b>제 9 조 (상환 의무)</b></p> <p>① 구매기업과 은행 간에 사전에 협의한 전산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명세 통보시 해킹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채권명세 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본인이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창구에서 대출 신청시 전산오류와 해킹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정당한 외상매출채권금액보다 대출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경우에 그 차액은 본인이 즉시 갚기로 합니다.</p>	<p>항 번호 신설 및 문구 수정</p>
<p>(신설)</p>	<p>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「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(기업용)」 제 7 조 3 항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본인이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허위·가공거래, 유통등에 의해 발행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이 취급된 경우</li> <li>2. 대출취급 시 작성오류, 허위, 위·변조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대출이 취급된 경우. 다만 작성오류인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자료를 보완 제출하면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/li> </ol>	<p>업무절차에 따른 항 및 호 신설</p>
<p><b>제 10 조 (기한연장 및 약정의 자동 해지)</b></p> <p>① (기재생략)</p> <p>②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발행받은 마지막 날로부터 2년이상 외상매출채권을 발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자로 본 이용약정 및 여신약정은 별다른 통보없이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p>	<p><b>제 10 조 (기한연장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(삭제)</p>	<p>손님에게 불리한 조항 수정 및 삭제 (금감원 권유)</p>
<p><b>제 11 조 (본 추가약정의 효력)</b></p> <p>본 추가약정, 원 약정서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본 추가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, 다음으로 원 약정서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의 순서로 적용됩니다.</p> <p><b>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기업용) (포괄계약)</b></p>	<p><b>제 11 조 (본 추가약정의 효력)</b></p> <p>본 추가약정, 원 약정서,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,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 및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, 금융결제원의 「B2B 업무규약」 및 「동 시행세칙」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본 추가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, 다음으로 원 약정서,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,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, 금융결제원의 「B2B 업무규약」 및 「동 시행세칙」,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의 순서로 적용됩니다.</p> <p><b>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기업용) (포괄계약)</b></p>	<p>준용 약관 기재</p>

<p>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과 <b>(이하 "판매기업"이라 합니다)</b>은 판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, 판매기업이 <b>(이하 "구매기업"이라 합니다)</b>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등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</p>	<p>(*)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과 <b>(이하 "협력기업 (또는 판매기업)"이라 합니다)</b>은 협력기업(또는 판매기업)의 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, <b>협력기업(또는 판매기업)이</b> <b>(이하 "구매기업"이라 합니다)</b>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등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</p>	용어 수정
<p><b>제 1 조 (계약의 목적)</b> 판매기업의 구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은행이 판매기업에게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은행과 판매기업 양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과 기타 그와 관련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</p>	<p><b>제 1 조 (계약의 목적)</b> 협력기업(또는 판매기업)의 구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은행이 판매기업에게 매출채권(팩토링)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과 협력기업(또는 판매기업) 양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과 기타 그와 관련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</p>	용어 수정
<p><b>제 2 조 (양도할 대상채권 및 피담보채무)</b> 판매기업은 아래의 피담보채무(이하 "피담보채무"라 합니다)를 담보하기 위하여,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체결한 아래의 기본계약에 따라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채권(이하 "대상채권"이라 합니다) 전액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.</p>	<p><b>제 2 조 (양도할 대상채권 및 피담보채무)</b> 협력기업(또는 판매기업)은 아래의 피담보채무(이하 "피담보채무"라 합니다)를 담보하기 위하여, 협력기업(또는 판매기업)과 구매기업이 체결한 아래의 기본계약에 따라 협력기업(또는 판매기업)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채권(이하 "대상채권"이라 합니다) 전액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.</p>	용어 수정
<p><b>피담보채무의 범위</b> 은행과 판매기업 당사자 사이에 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약정서(이하 "여신거래약정"이라 합니다)에 따라 판매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 기타 여신거래약정과 관련된 일체의 채무</p>	<p><b>피담보채무의 범위</b> 은행과 협력기업(또는 판매기업) 당사자 사이에 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약정서(이하 "여신거래약정"이라 합니다)에 따라 협력기업(또는 판매기업)이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 기타 여신거래약정과 관련된 일체의 채무</p>	용어 수정
<p><b>양도할 대상채권</b> 물품 또는 용역등과 관련하여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한 _____ 계약 및 이에 부수하여 체결한(또는 체결하는) 일체의 계약 등 또는 구매기업과 은행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매출채권</p>	<p><b>기본계약</b> 물품 또는 용역 등과 관련하여 협력기업(또는 판매기업)과 구매기업이 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한 _____ 계약 및 이에 부수하여 체결한(또는 체결하는) 일체의 계약 등 또는 구매기업과 은행이 체결한 업무협약</p>	법무법인 검토 의견 반영한 문구 수정
<p><b>제 3 조 (대리권 수여 및 채권양도 등)</b> ① <b>개별 승낙방식</b>인 경우 1.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매출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·확정되는 경우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명세를 통보받은 은행은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은행과 채권양도계약(자기계약)을 체결하고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구매기업에게 요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.</p>	<p><b>제 3 조 (대리권 수여 및 채권양도 등)</b> ① <b>활정채권 양도방식</b>인 경우 1. 협력기업(또는 판매기업)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매출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·확정되는 경우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명세를 통보받은 은행은 협력기업(또는 판매기업)을 대리하여 은행과 채권양도계약(자기계약)을 체결하고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구매기업에게</p>	법무법인 검토 의견 반영한 문구 수정

<p>2. <b>판매기업은</b> 제 1 호의 대리권 수여 및 자기계약체결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은행에게 어떠한 민·형사상 이의도 제기 하지 않기로 합니다.</p> <p>3. (기재생략)</p> <p>② <b>포괄 승낙방식</b>인 경우</p> <p>1. 판매기업은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구매기업 앞 포괄채권양도 통지할 수 있는 대리권한을 은행에게 수여합니다.</p> <p>2.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외상매출채권은 이 계약에 의해 채권양도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3. 은행은 외상매출채권 양도 통지서(포괄 승낙방식용) 원본을 구매기업에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.</p> <p><b>제 4 조 (판매기업의 진술 및 보증)</b></p> <p>① <b>판매기업은</b> 본 계약 체결시까지 대상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, 대상채권이 제 3 자에 의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, 구매기업으로부터 회수가능하고, 구매기업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<b>판매기업</b>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 은행이 <b>판매기업으로부터</b>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정을 보증합니다.</p> <p>②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<b>판매기업</b>이 진술하고 보증한 사항이 어위임이 밝혀진 경우, 은행의 요청에 따라 <b>판매기업</b>은 그 즉시 은행에게 그에 상당하는 대체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</p> <p><b>제 5 조 (변제충당 및 정산)</b></p> <p>은행이 <b>판매기업</b>으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 행사함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금원은, 우선적으로 은행의 <b>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</b> 제 13 조의 충당순서에 따라 <b>판매기업</b>의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, 남는 금원이 있으면 <b>판매기업</b>이 지정하는 <b>판매기업</b>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키기로 합니다.</p>	<p>요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.</p> <p>2. <b>협력기업(또는 판매기업)</b>은 제 1 호의 대리권 수여 및 자기계약체결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은행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b>장래채권 양도방식</b>인 경우</p> <p>1. 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은행은 협력기업(또는 판매기업)을 대리하여 구매기업에게 장래 발생할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외상매출채권 양도통지서(장래채권 양도방식용) 원본을 구매기업에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것으로 봅니다.</p> <p>2.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외상매출채권은 이 계약에 의해 채권양도된 것으로 봅니다. 은행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력기업(또는 판매기업)을 대리하여 구매기업에게 확정 외상매출채권에 관한 양도통지를 제 1 호에 추가하여 할 수 있고 이 경우 외상매출채권 양도통지서(확정채권 양도통지용) 원본을 구매기업에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방법에 의합니다.</p> <p>3. 협력기업(또는 판매기업)은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협력기업(또는 판매기업)을 대리하여 구매기업 앞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 대리권한을 은행에게 수여합니다.</p> <p><b>제 4 조 (협력기업(또는 판매기업)의 진술 및 보증)</b></p> <p>① <b>협력기업(또는 판매기업)</b>은 본 계약 체결시까지 대상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, 대상채권이 제 3 자에 의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, 구매기업으로부터 회수가능하고, 구매기업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<b>협력기업(또는 판매기업)</b>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 은행이 <b>협력기업(또는 판매기업)으로부터</b>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정을 보증합니다.</p> <p>②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<b>협력기업(또는 판매기업)</b>이 진술하고 보증한 사항이 어위임이 밝혀진 경우, 은행의 요청에 따라 <b>협력기업(또는 판매기업)</b>은 그 즉시 은행에게 그에 상당하는 대체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</p> <p><b>제 5 조 (변제충당 및 정산)</b></p> <p>은행이 <b>협력기업(또는 판매기업)</b>으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 행사함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금원은, 우선적으로 은행의 <b>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</b> 제 13 조의 충당순서에 따라 <b>협력기업(또는 판매기업)</b>의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, 남는 금원이 있으면</p>	<p>법무법인 검 토 의견 반영 한 문구 수정</p>
<p><b>제 4 조 (판매기업의 진술 및 보증)</b></p> <p>① <b>판매기업은</b> 본 계약 체결시까지 대상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, 대상채권이 제 3 자에 의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, 구매기업으로부터 회수가능하고, 구매기업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<b>판매기업</b>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 은행이 <b>판매기업으로부터</b>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정을 보증합니다.</p> <p>②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<b>판매기업</b>이 진술하고 보증한 사항이 어위임이 밝혀진 경우, 은행의 요청에 따라 <b>판매기업</b>은 그 즉시 은행에게 그에 상당하는 대체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</p> <p><b>제 5 조 (변제충당 및 정산)</b></p> <p>은행이 <b>판매기업</b>으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 행사함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금원은, 우선적으로 은행의 <b>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</b> 제 13 조의 충당순서에 따라 <b>판매기업</b>의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, 남는 금원이 있으면 <b>판매기업</b>이 지정하는 <b>판매기업</b>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키기로 합니다.</p>	<p>용어 수정 용어 수정</p>	
<p><b>제 4 조 (판매기업의 진술 및 보증)</b></p> <p>① <b>판매기업은</b> 본 계약 체결시까지 대상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, 대상채권이 제 3 자에 의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, 구매기업으로부터 회수가능하고, 구매기업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<b>판매기업</b>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 은행이 <b>판매기업으로부터</b>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정을 보증합니다.</p> <p>②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<b>판매기업</b>이 진술하고 보증한 사항이 어위임이 밝혀진 경우, 은행의 요청에 따라 <b>판매기업</b>은 그 즉시 은행에게 그에 상당하는 대체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</p> <p><b>제 5 조 (변제충당 및 정산)</b></p> <p>은행이 <b>판매기업</b>으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 행사함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금원은, 우선적으로 은행의 <b>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</b> 제 13 조의 충당순서에 따라 <b>판매기업</b>의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, 남는 금원이 있으면 <b>판매기업</b>이 지정하는 <b>판매기업</b>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키기로 합니다.</p>	<p>용어 수정 용어 수정</p>	<p>용어 수정 용어 수정</p>

단 판매기업의 다른 채권자가 대상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는 경우 그 압류된 금액 범위내에서 본계약에 의한 채권양도의 효력과 압류 등 효력이 선후가 결정될 때까지 남은 금원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기로 합니다.

협력기업(또는 판매기업)이 지정하는 협력기업(또는 판매기업)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키기로 합니다. 단 협력기업(또는 판매기업)의 다른 채권자가 대상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는 경우 그 압류된 금액 범위내에서 본계약에 의한 채권양도의 효력과 압류 등 효력이 선후가 결정될 때까지 남은 금원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기로 합니다.

**제 6 조 (담보가치의 유지)~제 7 조 (특약사항)  
(기재생략)**

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,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[여신거래약정서(기업용), <u>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</u> ,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포괄계약)]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,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, 이를 약정함.	본인	(인)
---	----	-----

**제 6 조 (담보가치의 유지)~제 7 조 (특약사항)  
(연행과 같음)**

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[여신거래약정서(기업용), <u>추가약정서</u> ,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 (포괄계약)]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,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, 이를 약정함.	본인	(인)
---	----	-----

용어 수정

본인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약정과 관련하여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통합약정서 중요내용 설명서에 기재된 상환청구권 및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설명을 읽고 이해하였으며,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시 본인에게 대출금 상환의무가 있음을 확인함.	본인	(인)
---	----	-----

본인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약정과 관련하여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통합약정서 중요내용 설명서에 기재된 상환청구권 및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설명을 읽고 이해하였으며,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시 본인에게 대출금 상환의무가 있음을 확인함.	본인	(인)
---	----	-----

20 년 월 일

20 년 월 일

채권양수인 (은행)	본인(채무자겸 채권양도인)	채권양수인 (은행)	본인(채무자겸 채권양도인)	
주식회사 <b>하나은행</b> _____ (인)	_____ (인)	주식회사 <b>하나은행</b> _____ (인)	_____ (인)	
주 소 : _____ _____	주 소 : _____ _____	주 소 : _____ _____	주 소 : _____ _____	
구매기업 (중심기업) 정보		구매기업 (중심기업) 정보		
업 체 코 드: _____		업 체 코 드: _____		
중 심 기 업 명: _____		중 심 기 업 명: _____		
중심기업 사업자번호: _____		중심기업 사업자번호: _____		

2. 개정 시행일 : 2019년 5월 30일

3.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: 적용